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7108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7. 09. 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09. 19.

# 맥적단 정보공개서

(주)비바리즈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 4 길 26 (주)비바리즈 대표번호 (가맹사업부와 동일): 070-4207-7709

> > vivaleeds@naver.com

#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M GRILLED MEA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0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 02 : 필수품목 리스트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 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 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20. 12. 09.	2020. 12. 01.	(주)비바리즈 사업자등록번호 656-81-01854 법인등록번호 220111-0213496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র	소
가맹본부	(주)비바리즈	맥적단		E 제주시 애월읍 4길 26
특수관계인	고혜지(사내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임원)	이유진(감사)	고혜지	070-4207-7709	-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 한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 • 합병일	주소	대표자
다른 기업의 가맹 사업 일부를 인수 함	㈜샤브향 에프앤비	제주 울어 멍해장국	2021. 02. 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805 호(장항 동, 위너스 21)	조광 식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맥적단	
상 호	맥적단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상표(서비스표)	S. S. R. September 19 September	_
영업표지	맥적단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1)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693,427	680,288	13,138	407,602	4,299	1,383
2022	918,321	615,418	302,902	399,583	11,548	763
2023	1,022,164	716,474	305,690	306,793	15,771	2,787

<sup>-</sup> 그 근거는 [별첨1]과 같습니다.

##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적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한민어구	디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고혜지	2020. 12. 09.~현재	㈜비바리즈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관련 임원			㈜비바리즈 감사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2023년도) **임직원** 수

시점	임원	<u></u> 원수	직원수 (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전구 (경)	
2023년 12월 31일 기준	2	0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_	_	_	_	_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인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10 - 70	서비스표	2021.02.23	4020210036824	고혜지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



# Ⅱ. 가맹본부의 [맥적단]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직영점 오픈일): 가맹계약체결사실 없음

#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바론에프앤비	제주 쉬멍해장국	고정배	2017.08~20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2 로 23 지오빌딩 302 호
㈜바론에 프앤비	제주 쉬멍해장국	이유진	2017.12~2018.0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2 로 23 지오빌딩 302 호
㈜바론에프앤비	제주 울어멍해장국	이유진	2018.07~2019. 11.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2 로 23 지오빌딩 302 호
㈜바론에프앤비	제주 울어멍해장국	조광식	2019. 11. 18. ~2020. 05.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2 로 23 지오빌딩 302 호
㈜샤브향에프앤비	제주 울어멍해장국	A SING	2020. 05. 14. ~2021. 01. 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805 호(장항동, 위너스 21)
㈜비바리즈	제주 울어멍해장국	고혜지	2021. 02. 01.~2022. 04. 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 4 길 26
㈜비바리즈	맥적단	고혜지	2022. 04. 08.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 4 길 26

# 3. [맥적단] 업종

영업표지	업종		
맥적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불고기, 불제육	

#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맥적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	------------	------------	-------------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百炙鱼	0	0	0	0
전남	0	0	0/	O KORE	AN GRILLEO MEAT	0	0	0	0
경북	0	0	0	0	0	90	0	0	0
경남	0	0	0	0 1	78	0	0	0	0
제주	0	0	0	0	HZJOI	0/	0	0	0

# 5. 바로 전 3년간 [맥적단]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8	0	0	8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 6. [맥적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맥적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그ㅂ	상호/이름	여어포기	정보공개서		가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	경호/이름	9 H T M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체 다었으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00001451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비고
전체	0	_	_	_	_	_	_	_
서울	0	_	_	_	_	_	_	_
인천	0	_	_	_	_	_	_	_
경기	0	_	_	_	_	_	_	_
부산	0	_	_	_	_	_	_	_
대구	0	_	_	_	_	_	_	_
세종	0	_	_	_	_	_	_	_
대전	0	_	_	_	_	_	_	_
울산	0	_		新 炙 團 三	_	_	_	_
강원	0	_		DREAN GRILLED MEAT	(#)_\\	_	_	_
충북	0	_	A Park	SINCE	- <u>-</u>	_	_	_
충남	0	_	7	19 78	<u></u>	_	_	_
전북	0	1		맥적단	00	-	_	_
전남	0	_		開降區 巴丘巴 化岩區	_	_	_	_
경북	0	_	_	_	_	_	_	_
경남	0	1	_	_	_	_	_	_
제주	0	-	_	_	_	-	_	_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 항·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 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맥적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맥적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2023	0

# 9. 지사의 일반 정보

[맥적단]은 현재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해당사항 없음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 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l 연속도 시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50 덕성빌딩	064-746-9915

#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국민은 행 계좌가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 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
있는 사업자	인터넷 뱅킹 이용시	(www.kbstar.com) 접속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SOHO센터)클릭 → ⑤ (가맹금예치제도)클릭→ ⑥ (가맹점 사업자)클릭 → ⑦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⑧ 가맹금예 치 완료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시	<b>개설시</b>   ② 실명확인증표(전문증)	
필요서 류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입금을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수 입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은 대리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여 본인이 직접국민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는 매장 업무시 (09:00~16:00)에만 가능하며 휴일 및 토요일에는 불가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국민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 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트 맥적을 만드는 사람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맥적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 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u>-</u>			
구분	금액 (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770 만원	계약	-가입비(가맹비의 10%)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제공, 노하우 전수 및 운영 교육, 오픈 지원 (가맹비의 90%)
교육비	330 만원	新 炙 團 KOREAN GRILLED MEA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 \*반환조건: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 2) 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맥적을 만드는 사람들

[ 백적단]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300 만원 (VAT없음)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기하기 계약조로 후의 조치사하은 이	직전년도 전체 가 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 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ㅂ	금액(VAT포함)			
구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1,400만원	1,015만원		

가맹비	770만원	385만원
교육비	330만원	330만원
보증금	300만원(VAT없음)	300만원(VAT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99㎡기준(약 30평)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_	8,470	282.3	_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협력업체)	4,950 A VI NOREAN GRILLED	165		3.3㎡당 165만원-
간판	(협력업체)	550 19 7	해당 없음		1 회배 기준 세부내역모두포함시 (협력업체실사 후 변동될 수 있음)
주방/홀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2,750 <b>1171</b>	91.6	/ 당사의 귀책사유가	테이블,의탁자 포함
홍보물	가맹본부	220	해당 없음	없는 한 시공 및	_
POS	(협력업체)	-	해당 없음	이구에ㄴ	용지별매/주방프린터별도
별도금액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초도식자재, 철거,냉난방기,소방설비, 외장공사,CCTV 전기증설,도시가스, 전화기,컴퓨터, 닥트공사,순간온수기 테라스 등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반환될 수 없음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m^2$  기준으로 22만원(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3일**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가 아닐 것	부권증 소지자일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8) 가맹금등 분납 제도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 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 참고하시기 바랍니	, _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점포환경개선 시 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3.3%	말일정산 후 매익월 10일 당사에 지급	정기방문, 마케팅,운영 매니지먼트 비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9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요구에 의하여 점포를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용은 해당 사유를 감안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

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 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해당 사실을 알리고, BI·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385 만원, VAT 포함), **교육비**(330 만원, VAT 포함), **보증금**(3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770 만원, VAT 포함), **교육비**(330 만원, VAT 포함), **보증금**(3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맥적단"임을 알 수있는 영업표 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 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맥적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 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 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맥적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맥적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맥적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 당사가 지정한 메뉴만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개점 전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 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 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F	
최근하는 메뉴이 제하	의바 시 채이

	1 회 위반: 구두 경고
V-3-3)의 메뉴명 외	2 회 위반: 2 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맥적단]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명	권장가격(원)	가격통보 방법
직화 불고기 소반	IREAN GRILLED MEA 8,500	
직화 불제육 소반	8,500	
치즈 직화 불고기 소반	<sup>19</sup> <b>7</b> 89,500	
치즈 직화 불제육 소반	백과단 9,500	
데미그라스 함박 소반	1 N 2 P 5 L N 2 9,000	월별 홈페이지 공지
소불고기 소반	11,000	또는 당사의 교육직원이
매콤 흑돼지 두루치기	22,000	귀하의 점포에 방문하여
치즈 매콤 흑돼지 두루치기	24,000	별도 공지
직화육포 & 우도땅콩	16,000	
계란 프라이	500	
눈꽃 치즈	1,000	
셀프 날치알 주먹밥	3,000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 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 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SEC BO BII	가맹본부	계열회사	
불고기, 불제육 전문 가맹사업	맥적단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변경 가능 여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맹점사업자 동의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 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MINS DEF USA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영업지역 변경(안)을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서면으로 통시하고 30 일
경우	면경(안) 작성 →	어테에 증취 여구 최진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기매전사업자 도이 →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영업지역 변경 완료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맥적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맥적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EAN GRILLED MEAT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맥적을 만드는 사람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백적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없음	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지중
----------------	-------------

2023 0%	0%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 ① [맥적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무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①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 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 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①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 득을 하지 못한 경우
- ④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⑤ [맥적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⑥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 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①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
- 한 ④ 메뉴판매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 8 광고 및 판촉 9 경업금지 10 상품공급의 중단 11 로열티의 납입 12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 3. 제 7 조제 2 항 실내장식, 점포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4.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5. 제 9 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6.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7. 제 18 조제 2 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8. "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9.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 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이내에 중의 어구 외인 도이가 이느 겨오 스저게야서에 저하 나브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 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 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이나 전전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맥적단]의 메뉴,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貊炙團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5-1) <b>가맹계약의 기간</b> 에 따 른 기간	불고기, 불제육 및 당사가 취급하는 물품들을 판매 및 배달하는 업종 및 이와 관련된 가맹사 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및 샵인샵 등	국내 전 지역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자율	주 6 일이상 (26 일)	연속하여 7일이상 무단휴업불가	

# 3)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99 m'기준	직접 근무 여부
홀 3명 이상 주방 2명 이상	직접 근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맥적단]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전국 광고	브랜드광고	20%	80% (귀하의 매출 액/전체 가맹 점의 총 매출 액에 해당되는 비율)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 30일 전 계
광고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30%	70%	획안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가맹점모집광고		100%	_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 니다.)
	,	개별광고	-	100%	
판촉	전국	는 및 지역별 판촉	20%	80%	
也等	7	개별판촉	_	100%	_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유지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을"이 계약해지·종료 시 제 13 조 제 1 항 내지 2 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갑"에게 위약벌 ( 1,000 만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ガ다 🖹

- ③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직전 3 개월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공급업체와의 총 거래대금의 30% x 10% x 잔여계약기간(월)]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④ "을"이 제 6 조 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2,000 만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제 9 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른다.
- ⑥ 본 조의 경우 "갑"의 지급요청일에 "을"이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을"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①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패소한 자는 소송 등으로 소요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변호사보수 등)를 승소한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⑧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 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손해를 배상하도

록 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_	30~37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7~14일 (변호사 및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가맹거래사 의 자문을 받은 경우 7 일)	까 기메리 나이지의 브드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 작성 -가맹금 예치 안내	2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수	공사 실시	30일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7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소스류 및 로고삽입된 비품 입고	1일	
오픈	-영업시작	당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 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 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貊炙團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 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개선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후화리, 인테리어 후화로 인테 노후으로 이 나 함에 보고 하는 이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 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부터	점포환경개 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계약이 약이 약이 함의 하다 (계약이 하다) 경우부 중에 부지 하다 이 경우수 기하는은 이 하거 지구에 가 하게 되어 가 하는는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 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화를 위한 가맹점 개조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 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맥적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회사소개, 주방요리방법 ,점 포운영의 노하우,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이론 및 실 습교육	개점 전일	필수
개점 후 교육	본사정책 안내, 제품 품질관 리 교육, 제품 평가회 등	교육 실습	추후 공지	필수

##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천원 ,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약 5일 (1일 7시간)	3,300 (1인기준)	-
개점 후 교육	추후 공지	당사부담 (예외있음)	경우에 따라 실비부담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 본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 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_	_	_	-

<sup>-</sup>당사는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9 778	_

-당사는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_	_

<sup>-</sup>당사는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tel: 070-4207-770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貊炙團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3. 2021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2] 필수품목 리스트 (가맹점 오픈에 필요한 주방설비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본부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점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